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교육위원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시대상 정보에 연구부정행위 발생·검증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 포함 〉

■ 진선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047호)

2024.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 우 정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 개요	2
2. 대학등의 연구윤리 확보 관련 규정	4
3. 대학의 연구윤리 부정행위 현황	9
4. 검토의견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진선미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21.
3. 회부연월일 : 2024. 8.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시 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논문 표절 문제 등 연구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않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학술진흥법」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발생·검증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고등교육기관이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3호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기관 정보공개법”이라 함)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학술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발생·검증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 등) ①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 등) ① ----- ----- ----- ----- -----.
1. ~ 12. (생략)	1. ~ 12. (현행과 같음)
<u><신설></u>	<u>13. 「학술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발생·검증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u>
<u>13.</u> (생략)	<u>14.</u> (현행 제13호와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6조는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하며, 그 학교의 장은 해당 공시정보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¹⁾.

이에 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의 범위·횟수 및 시기 등을 시행령에서 공시정보 항목별로 구체화하고 있고²⁾,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 8의2.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9.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0. 학교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11.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12.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1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공시한 정보를 학교의 종류별·지역별 등으로 분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의 범위·횟수 및 시기 등)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시정보의 범위·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하 “고등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표 2의 공시정보를 전공단위 또는 모집단위 및 학교단위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원에 관한 정보는 대학과 구분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2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별표2 (일부만 예시)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1. 학교규칙 등 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	학교규칙 및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대학	수시	수시
2.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보를 공시하여야 하고³⁾,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시정보를 통합하여 관리 및 주요항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 연구윤리 확보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학술진흥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규율을 하고 있음.

「학술진흥법」은 대학 및 연구자의 연구활동을 일반적으로 규율하면서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해 연구윤리지침(교육부) 및 연구윤리규정(대학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⁴⁾. 한편, 동 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3) 시행령 제5조(고등교육기관 정보의 관리 및 공개)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시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공시정보 중에서 주요 항목을 표준화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정보공시 방법) ①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운영하는 공시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②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공시정보 자료를 따로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시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열람이나 사본·복제물의 제공·우송에 드는 비용은 실제비용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4) 「**학술진흥법**」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대학등은 다음 각 호의 연구부정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대학등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의 작성, 제3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및 제4항에 따른 대학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위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음⁵⁾.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국가가 예산등으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⁶⁾을 규율하는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을 규정하면서 제재처분의 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⁷⁾.

동 법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등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며 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⁸⁾,

부정행위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제재처분(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 또는 부과금액이 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을 하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⁹⁾.

5)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대학등의 조치) ①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등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검증 및 제재조치가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고,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8)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⑦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20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통합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

2.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

< 연구윤리 관련 현행 법령 >

	학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대상	학술연구 일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관련 규정	연구부정행위 금지, 관련 지침 및 규정 마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재처분, 제재처분의 절차 및 사후관리 등
부정행위 통지/보고	사업비 지원받은 대학은 교육부장관 통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공개	-	일정 수준 이상의 제재처분시 통합정보시스템 등에 공개
법률 소관	교육부	과기부

즉,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예산등을 지원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교육부 등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 보고 등을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달리, 연구비·사업비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 연구의 경우에는 대학등의 자체 연구윤리 기준에 따라 연구윤리를 검증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부장관 등 소관 중앙행정기관에게 관련 정보가 보고되거나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임.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자체연구에 대한 연구윤리 확보 관련 절차 >

구분		연구윤리 확보 관련 절차
국가 연구개발 사업	교육부 소관	·교육부장관에게 통지(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공개(혁신법 제33조)
	타부처 소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혁신법 제31조)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공개(혁신법 제33조)
자체 연구 등		·자체 연구윤리 기준에 따라 연구윤리 검증 (학술진흥법 제15조제4항)

한편, 현행 법령과 지침에 근거¹⁰⁾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구분하여 ①대학의 연구윤리 제도 및 조직, ②연구부정행위 발생 및 처리, ③연구윤리 교육 및 부정행위 예방, ④특수관계인 관리규정 및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음¹¹⁾. 동 조사는 대학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분석하며, 전반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있으나, 개별 대학별로 구체적인 부정행위 발생 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음¹²⁾.

또한, ‘연구윤리정보포털¹³⁾’을 통해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다양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당 포털에서 공개되고 있는 연구부정행위 관련 정보는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교육자료와 학술자료, 가이드라인 등으로 개정안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발생·검증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

10)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대학등의 조치) ②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등의 장이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6조(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⑥ 대학등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 한국연구재단, 「2022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 2023.12. 참조

12) 이를테면 “연구부정행위 의혹추이”의 경우, 연도별로 전체적인 건수를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부정행위 사례나 개별 대학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음.



13) 연구윤리정보포털 (<https://www.cre.or.kr/>)

- 교육부는 대학등 연구기관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문화 확립을 위해 한국연구재단 내 연구윤리정보센터를 설치함.

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임.

개정안은 최근 논문 표절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논의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연구부정행위의 발생·검증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을 대학별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연구윤리 확보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개정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특히, 현재 연구부정행위 관련 정보공개 제도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법령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 제재조치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있는데 사실상 공개조항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며¹⁴⁾, 연구윤리 실태조사 및 연구윤리정보포털 등의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발생·검증 및 조치결과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아울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2조는 제재처분의 사유와 처분의 내용 뿐만 아니라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제재대상자의 성명 및 국가연구자번호, 제재대상자 소속기관의 명칭 및 주소까지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¹⁵⁾,

개정안의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발생·검증 및 조치 결과에 관한

14) 공개 기준을 넘는 수위의 처분사례가 극히 적어 공개조항의 입법실효성이 제한적임.

통합정보시스템(NT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등록일부터 6개월간 공개하고 있는데, 2024년 9월 현재 2건이며,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는 관련 사례가 없음.

1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2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②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해야 하는 제재처분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재처분의 사유 및 처분의 내용
2.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의 성명 및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 식별을 위하여 발부하는 국가연구자번호
4. 제재대상자 소속기관의 명칭 및 주소

사항을 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공시정보의 범위·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¹⁶⁾,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법익이 작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¹⁷⁾.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 등 관계기관은 다음과 같은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함.

<관계기관 의견>

【교육부】 : 신중검토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연구부정행위 관련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대학이 학교평판 등 부정적 이미지 등을 우려하여 오히려 **연구윤리 검증을 회피·축소하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 부정행위가 많은 것인지 적극적인 검증에 따른 것인지 구분이 어려움에 따라 **정보의 왜곡 및 수요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현행법체계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제재처분이 아닌 경우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대학등과 타 연구기관(출연연등)간 형평에 어긋날 우려가 있음.**

○ 한국연구재단 : 신중검토

- 연구부정행위 관련 사항공시의 법제화는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구부정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방향으로 왜곡될 수 있음.
- 또한,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신중검토

- 학생과 교원의 연구활동을 위축시킬 우려와 함께 개인정보를 포함할 경우 개인정보 공개 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16)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음.

17) 다만, 부칙에서 명확한 법률 적용을 위하여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85